

제2장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이란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지금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다양하지만 그 근저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실패, 시장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단일 영역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가적(pastoral)인 믿음은 버리고,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실패와 시장실패가 가져다주는 충격은 지역적으로는 중앙보다 지방이, 계급적으로는 상위층보다 하위층에서 부작용은 더욱 크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다중격차시대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⁴⁾라 총칭한다.

한국에서 민간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87년 체제 이후 도시지역에서 시작된 생협운동,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자활공동체사업, 2003년 노동부에서 시작된 사회적일자리사업,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인증 사회적기업 등이 그 예이다. 특히, 2011년 5월 기준, 2000년-2010년 기간에 자활공동체는 248배, 대안금융기관은 17배, 사회적기업은 9배, 서비스공급형 시민사회단체는 4배, 생활협동조합은 2배에 달하였다.⁵⁾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데, 사회적경제를 배태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시민사회 민간 주체들의 역량이 채 갖추어지기 전에 ‘제도화’가 선행됨으로써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사회적경제나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정규호, 2008: 115)을 고려할 경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실패,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사회적경제는 건강한 시민사회 토대위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

5) 자활공동체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을 통해, 대안금융기관은 인터넷자료 검색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은 생협전국연합회,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중복은 제외하였다. 서비스공급형 시민사회단체는 별도로 분류된 자료가 없었다. 현재 서비스공급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집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2월 경, 전체 비영리민간단체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제약상 전국에 있는 단체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인지하고, 대략적 수는 사회서비스와 서비스대상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정의를 기준으로, 서비스대상은 복지대상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으로 검색하여 수치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추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 사회적경제, 그 개념의 경계

지난 10여 년간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⁶⁾의 급성장 추세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는 국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도된 측면이 있다(노대명, 2009, 2010; 장원봉, 2006; 신명호, 2009; 주성수, 2010). 이는 사회적경제가 유럽에는 19세기를 지나 21세기에 걸쳐 다양한 이념과 실천형태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들에 의해 자료가 축적된 것과 달리, 한국의 그것은 역사가 일천하고 국가주도로 사회적경제가 이식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와 관련 다양한 개념과 분류가 존재한다. 먼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서로 다른 배경의 다양성이 혼재된 혼합적 다원주의 영역이며, 중개적 과정들의 복합체라는 주장이 있다(Llyoyd, 2007: 70-71; Quarter and Mook, 2010: 10).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⁷⁾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UK Cabinet Office, 2007: 90). 한편, 캐나다 퀘벡시에서 통용되는 공식 ‘사회적경제’ 영역은 “주창단체, 자원조직, 지역기반조직(CBO),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비영리섹터의 기업과 창의적 사업”을 망라하고 있음도 목격된다(Vaillancourt et al., 2004: 6).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임을 감안하여 생산, 교환, 분배, 소비를 담당하지 않는 시민사회 내의 주창적(advocacy) 활동 등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이와 함께 광의적 접근을 지지하는 OECD(2007)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사회경제정보센터도 “자원적 조직과 비정부조직, 공동체 경제개발조직과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섹터”,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기타 사회적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불이익계층의 포용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에 기초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을 모두 포함”(Goldenberg 2004: 12; 주성수, 2010: 18에서 재인용)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

6) 엄형식(2008)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구분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들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생협(소비자생협, 노동자생협), 사회적기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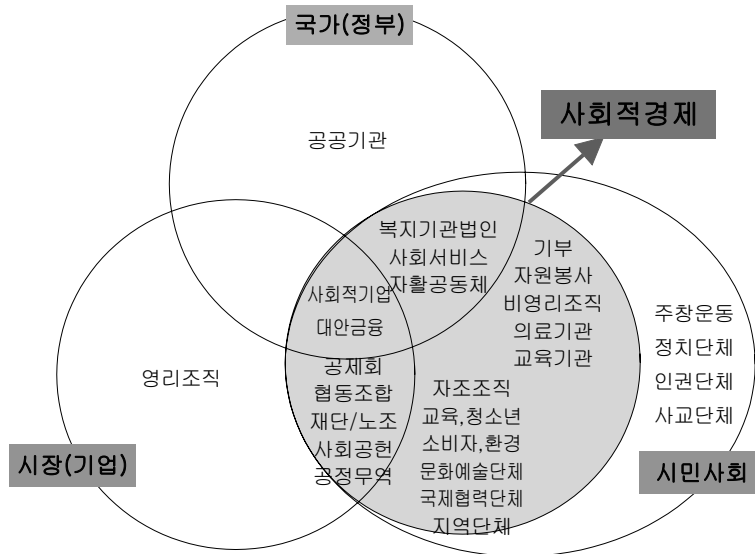
7) 사회적경제는 비영리조직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Salamon & Anheier(1996)가 정의하는 ‘비영리조직’의 개념은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고, 이는 사회적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좁은 의미의 개념 정리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이윤배분을 하는 협동조합을 비영리섹터에서 제외한다. Salamon(2006)은 비영리섹터에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결사체,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을 포함한 영역을 사회적경제로 제시한다(주성수, 2010: 24).

8) 사회적경제는 그것이 ‘경제’인 이상,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한 개념이다. 유럽의 ‘economie sociale’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명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 영역들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라면, 사회적경제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생산하거나 교환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이다(노대명, 2009: 24).

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이용한 사회적 조직도 포함하고 있다(Goldenberg 2004: 17; 주성수, 2010: 28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는 Quarter & Mook(2010: 10-16)의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 분류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1]).

[그림 1] 국가(정부)-시장-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와 중첩된 ‘공적 비영리조직(public sector nonprofit)’, 시장과 중첩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social economy business)’와,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중첩된 중앙의 ‘지역경제개발(CE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영역으로 구분된다(Quarter & Mook, 2010: 10-16).

[그림 1]이 지니는 함의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내에 배태(embedded)되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사회적’가치가 생산, 교환, 분배, 소비되는 주무대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 내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민사회의 역량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는 건강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해야 한다.

3.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와의 차이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되는 시민사회는 제3섹터와 동의어이다. 제3섹터의 의미는 개별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유럽과 미국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의 경우 제3섹터의 개념은 정부의 공적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였다.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달리 '복지혼합(welfare mix)' 내지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일부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Evers & Lavilee, 2004: 14).

이에 반해, 미국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로 인해 제3섹터가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제3섹터는 시장과 구분되는 대척점으로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을 위치시키고 있다. Salamon & Anheier(1997)는 제3섹터의 특징을 공식적(formal)이며, 정부와는 독립된 관계로 자치적이고,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특히 이윤배분의 제한-자본의 분담금이나 소득의 형태로 조직의 이윤을 받는 소유자가 없고, 이윤을 낼 수는 있지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준으로 강조된다(앤하이어·사이벨, 2002: 42; 김승현, 2008: 32; 노대명, 2009).

이윤 배분에 대한 엄격성으로 말미암아 제3섹터라는 개념이 비영리부문과 등치될 때 이는 미국에서 주로 통용되고, 유럽권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적 전통으로 볼 때, 제3섹터는 영리부문과 다른 비영리부문이고 국가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권은 미국식 분류를 따르지 않고,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제3섹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일부'라는 가설을 발전시켜왔다(Evers, 1995; 신명호, 2009: 18에서 재인용).

이상을 기준으로 시민사회영역을 요약하면, 한국은 완전한 유럽식 시민사회의 개념이 아닌 미국식 시민사회의 개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1섹터, 2섹터와 구분되는 3섹터로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방식, 문제해결 방식에서 '다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위기

첫째, 사회적경제의 자율성 문제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영국식 모델에 근접하다면, 국가(정부)와의 관계 또한 복잡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중첩되어 있어 중간적 조직, 보완적 조직

으로 그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⁹⁾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의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정부와의 파트너십 제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중간 목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궁극적 목표)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제8조)에는 8가지 요건을 제시하여 요건나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제8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경영지원(제10조), 교육훈련지원(제10조2),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3조), 재정지원(제14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볼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가에 대한 자율성이 문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의 일체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개입의 정당성은 사회적 약자(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를 배려하고, 통합해야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게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고, 이는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사회적 목적이 된다. 이를 국가만이 하기에는 버겁고 불가능한 현실임을 인식할 때,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자원을 동원(mobilization)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축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것이 보편적 형태임을 감안할 때(Defourny & Nyssens, 2006: 15), 즉, 우리의 화두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보다는 ‘사회적’이냐가 우선적 논의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성찰 없이, 정부의 위탁 사업을 조직의 고유사업에 대한 인건비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는 다분하다.¹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1섹터)와의 관계는 보다 정교하고도 세심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영역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은 필요불가결하다. 그 자원은 유무형의 자원으로 자원봉사, 윤리적소비, 기부,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원

9) 한국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대상하는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그 예로 삼는다.

10) 박찬임(2009)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촉진하기 어렵고,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 수익을 통하여 근로자 인건비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이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어진다면 사회적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려 할 것이고, 결국 민간 부문의 오랜 미덕인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부 사업의 대행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봉사, 윤리적소비, 기부 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Arthur et al(2005: 16)의 표현처럼,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말 도덕적으로 가치있고, 투자할 만한 곳인지, 윤리적소비가 진정 가치있는지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는 일반대중에게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기업의 유사(pseudo) 영리민간기업화 문제

사회적경제가 ‘경제’영역을 담당하므로 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가치’는 여타의 일반영리기업이 흉내 낼 수 없는 그 무엇인 점은 분명하다.¹¹⁾

그럼에도, 비영리단체가 영리민간단체와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blurred) 있다는 점(Schelesinger, 2004)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장원봉(2009)의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¹²⁾ 개념은 유용한 수사(rhetoric)이다. 아울러,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이론을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시장화를 분석한 아이켄베리와 클루버(Eikerberry & Kluver, 2004)의 논의와도 맥을 함께 한다. 여기에서 그들은 최근의 제도적 환경이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판매의 수익구조와 영리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조를 강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의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 자원을 획득하려는 경향,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찰이나 경험 없이 발전전략을 모범사례에 의존하여 동일화되어가는 경향,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자원을 재화 생산·판매방식에 의존하는 영리민간단체와 유사하게 변하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국가실패,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전환적 시도임을 고려할 때, 특히 영리민간기업과 같이 시장화에 집착하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rationale)는 무색해질 것이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발현하기 위한 근저에 각각의 액터(국가-시장-시민사회)간 창의와 협력이 어떠한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11)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는 구분된다.

12) 제도적 동형화는 제도적 규범을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 조직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효율성의 차원과는 무관하게 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에 의해 동일하게 변형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장원봉, 2009: 153).

셋째, 사회적경제의 신뢰 및 건강성 문제

시민사회가 영역을 구분하여 국가-시장과는 유리된 곳에 위치된 이유는 국가와 시장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담당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정부서비스의 전달기관이 될 경우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강도는 약하고 주변적일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미국사회에서 비영리부문의 대중적 신뢰기반 붕괴 이유 중 하나로 Schelesinger (2004)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부정을 들고 있다. 회계부정이 가지는 심각성은 비단 미국적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순히 회계에 대한 투명성 및 책무성 등에 대한 요구에 끝나지 않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불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실제 한국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수많은 부정행위 등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좋은 제도, 그것의 효능에 대해 너무나 많은 학습과 적용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시민사회는 건강한가? 아울러, 국가권력의 통제권을 넘어서는 시장권력에 무기력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자로서 시민사회가 자리매김될 때, 시민사회의 존재가치가 있다.

넷째, 시민사회와 일반시민과의 거리문제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의식변화는 더 이상 계몽주의적 관점에 의존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교육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이다(노대명, 2009: 86). 다양한 영역(문화, 환경 등)이 이미 시민사회에서 고민되고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연구되어 이론화되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중에도 시민사회(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력은 일반시민에게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단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일반시민은 얼마나 될까? 우스운 얘기지만, 일반 학자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를 두고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냐’고 했던 웃지 못하는 말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정통성 위기를 다룬 Schlesinger(2004)는 미국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최근의 변화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경제사회적 위협의 결과에 따라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재원과 운영방식에서 최초로 실험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전통적 인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장원봉, 2010: 91). 비단, 미국뿐만 아니

라 한국에서도 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라고 설파하기 이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 근거를 확인하고 그들의 사회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따뜻한 얼굴을 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음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필요서비스가 인식되고, 그것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 중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내에서 상호신뢰와 호혜성으로 착근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확장문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법률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¹³⁾ '사회적'인 기업이 상당함에도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록 그것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부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동형화'(장원봉, 200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서울, 충남, 강원)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담부서 설치 등과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특색을 살린 지역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⁴⁾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경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연의 확대와 내연의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지식축적의 기회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중복과 난립을 최소화하는 데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3) 비정부조직(NGO)은 정부가 그 용어의 독점사용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탄력적인 개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신명호, 2009).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라는 네트워크는 2008년 6월, 참가단체를 확대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변경한 바 있다. 자신들의 지향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경제'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길고 오랜 토론 끝에,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신명호, 2009: 12-13).

아울러, 중간조직이긴 하지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도 사회적경제영역으로의 전환 확산에 일정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김승현. (2008).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집문당.
- 노대명. (2009).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가지 이유”. 창작과비평, 통권 145호. 2009. pp. 73-93
- 노대명. (2010).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2호. 2010,4, pp.87-96.
- 박찬임. (2009).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 『시민과 세계』, 15.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앤하이어, 샤이벨. (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아르케.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장원봉. (2009).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전략. 『시민과 세계』, 15: 150-164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의미와 역할, 6(1): 113-148. 2008년 봄/여름. 시민사회와 NGO
- 주성수. (2010). 『사회적경제 :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 출판부.
- Arther, L., Cato, M., Keenoy, T, and R. Smith. (2005). "Develop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http://arnova.onnibooksonline.com/2006/data/papers/PN06020.3.pdf>.
- Defourny, J. and M. Nyssens.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Nyssens ed.,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 Evers, A., and J. Laville. (2004).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Evers and Lavill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pp. 11-43.
- Goldenberg, M. (2004). Social Innovation in Canad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http://envision.ca/pdf/SocialEconomy/SocialInnovation.pdf>.
- Lloyd, P. (2007). "The Social Economy in the New Political Economic Context." Noya, A. and Clarence, E. eds.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Paris: OECD, 61-90.
- OECD. (2007).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Paris.
- Quarter, J. and L. Mook. (2010). "An Interactive View of the Social Economy." Canadian Journal of Nonprofit and Social Economy Research 1/1, 8-22.
- Salamon, Lester M. & Helmut L. Anheier. (1997). Toward a Common Definition.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chlesinger, Mark, Mitchel, Shanno, & Bradford H. Gray. (2004). "Restricting Public Legitimacy to the Nonprofit Sector: A Survey Experiment Using Descriptions of Nonprofit Ownership",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3, No 4. December 2004.

UK Cabinet Office. (2007). "The Future Role of the Third Sector in Social and Economic Regeneration."

www.cabinetoffice.gov.uk/upload/assets/www.cabinetoffice.gov.uk/third_sector/the_future_role_of_the_third_sector_in_economic_and_social_regeneration.pdf

Vailancourt, Y Aubry, F., and M. Kearney. (2004). "The Contribution of Social Economy to the Healthy Social Policy Reforms in Canada." University of Quebec.

www.larepps.uqam.ca/publications/pdf_transversal/cahier04_04.pdf